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5638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김태영, 정안균, 현문경, 김준홍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김정남, 김지훈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52148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1. 5. 13.부터, 피고 C는 2021. 4.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2층 매점에 관하여 2014. 3. 21.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매점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E의 대표이사인 G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등이었던 피고들의 주선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E과 K은 위 수원시 권선구 F에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영업장의 매점영업권을 받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이 개시되고 1여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영업장의 개장이 지체되자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인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 17. 원고에게 E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써주었다.

마. 부산지방법검찰청은 2015. 12. 30. G의 사기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7.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면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리인인 D이 2015. 11. 25.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받고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의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1심증인 G의 증언뿐인데, 제1심증인 G의 증언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채무 면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제1심증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던

K과 공동으로 이 사건 영업장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실행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들과 G의 동업관계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G와의 임대차계약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보면, G에게 피고들의 채무면탈을 위해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존재한다.

②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날짜인 2015. 11. 25.은 원고의 G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던 때로, G이 무혐의처분을 받기 한 달 전쯤이다. 그렇다면, 아직 G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가 내려지기 이전으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경험칙과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하고,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면 채무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확인서는 E의 채무 이행 약속 및 G 개인의 연대보증의사만을 담고 있을 뿐,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 D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받고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증채무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서 하단에 'D 귀하'라는 글씨가 프린트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서명날인 등 진정 성립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고, 원고 또는 D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 측에 이 사건 확인서가 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E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던 점, G은 E의 대표이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계좌가 G 개인명의로의 계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G이 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특히 E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그 대표이사인 G 개인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점에서 그러하다.

⑥ D과 피고 C의 2017. 3. 1.자 통화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면서 G에 대한 고소를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원고가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 C로서는 책임 면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전체

통화내용에서 D과 피고 C 중 누구도 채무 면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 B가 빠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피고 C의 발언 등은 피고들의 채무 면제 주장과 배치된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사채권으로서 E의 대표이사 G이 채무 이행을 확약한 2015. 11. 25.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5. 11.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에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4.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인 이 사건 영업장과 그 대지에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6603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각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2017. 5.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14. 12. 24.부터 2017. 5. 30.까지 중단되었다가 2017. 5. 31.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1.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위와 같은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조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석, 판사 장지혜, 판사 이영범